

폐기물 처리업 사업장 안전실태 현장 점검

-제21차 현장점검의 날, 고위험 기계설비 및 폐전지 안전관리 중점 점검-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1월 13일(수) 제21차 현장점검의 날에 전년 대비 중대재해가 증가한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폐기물 처리업 등)을 대상으로 산업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에서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폐기물 처리업 등) 사업장의 폐기물 파쇄기, 고철압축기 등 고위험 기계설비의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정비 및 보수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수칙*을 지도한다.

- * ▲기계기구 사용방법 교육숙지, ▲기계기구 접촉 시 위험한 곳에 덮개안전가드 등 방호조치, ▲정비·보수 작업 시 전원 차단·잠금 조치 및 안전표지 부착, ▲작업지휘자 배치 등

이와 함께, 각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이를 개선토록 하면서,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폐기물 처리업 등)의 주요 사고사례와 핵심안전수칙을 배포하여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 <주요 사고사례> ▲4.20. 폐기물 파쇄기 내부에 들어가 청소작업 중 기계가 작동하여 사망, ▲8.7. 고철압축기 시험가동 중 미상의 점화원(부탄, LPG 추정)에 의해 화재·폭발이 발생하여 사망, ▲9.24. 폐기물 수거 중 화물차 암롤박스에 덮개를 씌우다가 2m 아래로 떨어져 사망

특히, 폐기물 처리업 중 1·2차 폐전지를 취급하는 사업장, 폐황산·폐염산 등이 포함된 2차 폐전지를 취급하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는 화재·폭발 위험방지,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폐기물 처리업 등은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분야로,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장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과 지역 사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업장은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작업장 청결 유지,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화재 및 비상대응 훈련과 같은 실질적인 안전보건 활동의 실천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산재 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책임자	과 장	배영일 (044-202-8901)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이재화 (044-202-8914) 전재영 (044-202-8915)



▶ **주요 사망사고 사례**

끼임	화재·폭발	떨어짐
		
<p>파쇄기 내부에서 청소 작업 중 끼임</p>	<p>고철압축기 시험가동 중 화재·폭발</p>	<p>폐기물 수거 중 암롤박스 상부에서 떨어짐</p>

모든 작업유형 별로 ①「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②위험요인을 확인·제거하고, ③제거된 위험요인의 적정 유지여부를 작업 전 반드시 확인!

핵심 안전조치

• **끼임 예방**

- 정비·청소·수리 등의 작업 시 기계·설비의 운전 정지(LOTO)
- 위험상황 시 파쇄기를 차단하는 비상정지장치 설치
- 운전 시작 전 근로자 교육 및 작업방법 등 안전조치 실시

• **화재·폭발 예방**

- 인화성 가스가 체류하여 폭발한계에 도달하지 않도록 환기장치를 가동하여 충분한 환기 실시
- 인화성 가스를 사전에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검지 및 경보장치 설치

• **떨어짐 예방**

- 차량 승·하강 시 추락방지조치 실시
- 근로자 교육 및 작업방법 등 안전조치 실시
- 개인보호구 착용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로 취급물질의 유해·위험성 확인 01



외국인 포함 모든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 실시 02



취급물질의 특성에 맞는 소화설비·소화기 구비 03



비상구 확보, 비상대피 훈련 실시 04



화재 감지·경보 장치 설치 05



화기나 점화원 접근 금지 06



물 접촉, 마찰·충격 금지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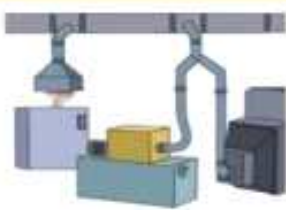
안전한 전지 제조·취급을 위한

10대 수칙

위험물질은 별도 장소에 보관 08



충분한 작업장 환기 09



주기적 유해·위험요인 발굴·개선 10





전지 제조·취급 안전수칙 점검표

○:적정, △:보완필요, ×:부적정

구분	점검항목	결과
1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통해 취급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확인하고 있나요?	
2	☛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하고 있나요?	
3	☛ 적절한 소화설비·소화기를 갖춰 두었나요?	
4	☛ 비상 시 이용할 비상구가 설치되어 있고, 대피훈련을 하나요?	
5	☛ 화재 감지·경보 장치를 설치하고 있나요?	
6	☛ 화기나 그 밖의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을 금지하고 있나요?	
7	☛ 물 접촉, 마찰·충격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나요? > 리튬 등 물반응성 물질, 인화성 고체는 빗물 등이 스며들지 않는 건축물 내에 보관·취급해야 합니다.	
8	☛ 위험물질은 별도 장소에 보관하고 있나요?	
9	☛ 환풍기, 배풍기 등 환기장치를 적절하게 설치하고 있나요?	
10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주기적으로 발굴·개선하고 있나요? > 사업장을 순회하면서 유해·위험요인을 찾고 개선하는 과정에 근로자 의견을 듣고, 개선 주의사항에 대해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